

식품안전관련 법령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분배구조 분석*

황윤재** 이희정*** 한재환****

Keywords

식품안전관련법(food safety related law), 식품안전기본법(Framework Act on Food Safety),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Abstract

With the consumer interest in food safety rising, the Korean government is strengthening its efforts to manage food safety. However, the frequent debate about improving the food safety system is largely concentrated on the rol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od safety control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a legal standpoint. Th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mostly given the power of policy and regulation making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he power of policy and regulation implemen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not given much power in risk communication for food safety.

차례

- | | |
|--------------------------|----------------------------|
| 1. 서론 | 4. 식품안전관련 개별법령의 권한 분배구조 분석 |
| 2. 식품안전관련법령의 현황과 구조 | |
| 3. 식품안전기본법에서의 권한 분배구조 분석 | 5. 요약 및 결론 |

* 이 논문은 황윤재·한재환(2009)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yjhwang@krei.re.kr

***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하기 어렵다.¹

최근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한 편이며,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중복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와 중앙정부의 인적·물적 자원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식품안전관련 권한 분배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의 식품안전관련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조망하고 있다. 최지현 외(2004)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경선 외(2008)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식품행정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에는 방민원(2001), 유영철(2004), 남진식 외(2006)의 연구가 있다. 방민원(2001)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검토소 간에 지도·단속 등 일부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04)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중복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영철은 집행업무인 제조·접객·판매업소의 감시, 수거·검사 등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 지역성 등에 의해 지방으로의 기능이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진식 외(2006)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면서, 식품안전관리

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의 시, 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자치권이 있는 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조직 개편의 일부로 중앙·지방 간 기능 재배분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중앙은 기준 제시 기능, 지자체는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배분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배분 현황을 단편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식품안전관련법령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류창호(2004)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제와 관련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권배근(2007)은 식품안전법제의 체계, 조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질서청과 질서법의 도입 필요성과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원우 외(2008)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품 내용물 규제, HACCP, 냉동식품 관리 등 취급·관리 제도, 식품표시제도 등 정보전달 관련 제도,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이계임 외(2009)는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체계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법률 체계 및 규정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 보다는 전반적인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가 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식품안전행정의 권한 분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두 축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련 권한분담 실태와 특징을 식품안전관련법령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 있다.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제는 이러한 식품안전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²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규제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배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적, 객관적인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구성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류(risk

² 규제집행기능에는 규제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조사권한과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제재권한의 행사가 포함된다. 규제는 유형별로 인·허가, 신고권한을 통해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진입규제권한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정립해준 행위기준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제재처분 등을 행위규제권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mmunication)의 요소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배분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³ 즉 첫째, 식품안전정책 구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의 분배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규제적 관점에서 규제기준정립과 집행기능의 분배구조를 분석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행정은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분석의 요소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식품안전기본법」과 농림수산물부의 대표적 식품안전관련법령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의 「식품위생법」 등 3개 개별법령에 적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련 권한 분담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식품안전관련법령의 현황과 구조

현행의 식품안전관련 법령체계는 식품의 종류별, 취급단계별로 개별법률을 두면서 상위에 개별법률을 총괄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두는 형태를 취한다.⁴ 즉, 기본법을 통해 식품의 생산·가공·소비단계별, 품목별로 각각 다른 행정기관이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규율하는 다원적 체계를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⁵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기본법과 다른 개별법령과의 관계, 관련인의 책무와 식품안전정책 수립, 정보공개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농식품 품목별, 취급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을 근거로 여러 관련 부처에 의해 집행된다.⁶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을 ‘식품안전

3 위험분석은 특정 위해 요소의 위험수준을 결정하고(위험평가), 이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도출하며(위험관리), 개인, 집단, 기관 간에 위험정보의 교환 전략을 요구하는(위험정보교환) 구조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과학적인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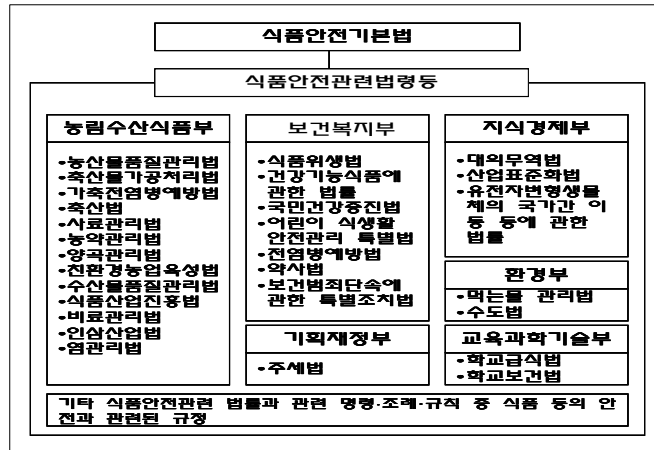
4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 13일 제정되었다.

5 김은진(2008) 참조.

6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법령'으로 명시하며, 이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28개 법령과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다<그림 1>.⁷

그림 1. 식품안전관련법령의 구조



주: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함.

식품안전관련법령의 다원화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다원화는 식품의 종류나 취급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다수의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을 집행하는 복수의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령이 식품의 종류나 취급단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 간의 역할·기능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식품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의 근원이 된다. 그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의 문제로는 식품안전관련 권한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사각지대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 책무,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 참여 등 식품안전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⁷ ‘식품안전관련법령’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계임 외(2008)는 ‘식품안전관련 법률’로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하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안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제시한 바 있다.

발생, 책임소재 불분명과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신속성, 일관성 결여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관련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국무총리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법령적·행정적 다원적 체계를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동반하지 않으며 개별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순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관련법령 간의 구조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을 통해 이 법이 ‘식품안전관련법령’의 ‘기본법’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반법’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제1항은 개별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일반법’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은 ‘식품안전관련법령’에서 ‘법률’에 한정된 규정으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⁹ 이는 기본법과 개별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고, 그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식품안전기본법」과 그 사안에 특별히 적용되는 개별법령이 있을 경우 개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2항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입법에 있어서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의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볼 수 있다. 제2항은 ‘식품안전법령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향후 국회가 식품안전관련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국회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지방의회나 지자체장이 이러한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정책방향이나 체계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자체가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 주체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식품안전관련 자치조례의 제정에 의한 권한행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식품안전

⁸ ‘기본법’의 역할은 다른 개별 관련법령에 대해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종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반법’은 통상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될 일반적 사안에 대해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⁹ 제2조 제5호는 “식품안전법령등”의 범위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¹⁰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자치사무와 단체사무에 대해 인정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관련 자치조례가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식품안전법령등’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자치조례가 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면, 자치조례는 법률이 아니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도 아니므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2항은 위임조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개념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그 시행을 위한 조례만이 포함된다고 보면, 법 제3조는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기본법과 자치조례의 관계가 결정된다. 자치조례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기본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¹¹

3. 식품안전기본법에서의 권한 분배구조 분석

「식품안전기본법」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특정 행정기관에 대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분배하기 보다는 개별법상 식품안전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을 포괄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포함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관계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 그러나 기본법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임무에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영역은 물론 자치사무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이미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집행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역할은 통상 단체장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위임을 받아 수행하게 되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전자를 자치조례라 하고 후자를 위임조례라 한다. 지자체가 실제로 식품안전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상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포괄적인 수권규정(授權規定) 외에 식품안전에 관한 개별법령의 해석과 지자체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의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 11 「식품안전기본법」상의 규정의 다수는 특정 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권한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의 기본체계 내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관련된 기관에게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해 규정하는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과의 관계는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1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물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농촌진흥청·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행정기관’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 어느 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것을 법의 목적(제1조)으로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역할이 배분된 규정은 많지 않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제4조(책무)와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로, 제4조는 지자체가 국가와 함께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내용이고, 제6조는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자체장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이들 조항을 통해 지자체가 식품행정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이며, 지역내에서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밖의 규정에서는 식품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자체가 「식품안전기본법」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기본법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밖에 「식품안전기본법」상 권한분배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행정에서 정책방향의 수립은 행정계획 수립을 통해 구현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제6조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식품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해 지자체장은 시행계획만을 수립한다.¹³ 시행령 제4조는 이러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상향식 권한행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¹⁴ 즉 시행계획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되며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한다. 한편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일종인 ‘추진실적제출’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향식 구조로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시행령 제5조).¹⁵

1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4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작성한 시행계획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15 기초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

위험분석적 측면에서 위험관리는 사안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에 분장되어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농수축산물과 신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제21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제22조)의 도입·시행에 대한 임무를 가짐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또한 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5조). 이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은 긴급대응방안의 집행에 협력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밖에 생산·판매금지처분(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를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생산·판매금지처분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은 금지처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금지해제요청에 따른 금지해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이는 긴급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식품 등의 생산·판매금지는 신속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해제는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추적조사에 있어서도 조사의 실시는 관계행정기관장이 하지만 관련시책 수립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

기준정립과 함께 위험평가에 관한 권한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진다. 이는 전문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0조). 또한 식품 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위험정보교환 기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제24조에서는 ‘정부’가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식품 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는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동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에게 당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를 포함하는 관계행정기관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는 부여되고 있지 않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식품안전법

행정기관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들 관계행정기관들에게 통보한다. 관계행정기관장은 다음 시행계획 수립시에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¹⁶ 생산·판매금지처분제도는 관계행정기관장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 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제24조 제3항), 소비자가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제24조 제4항). 한편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표’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표 1. 식품안전기본법의 권한 분배

법조항		역할범위			
		중앙정부 (국가)	관계중앙 행정기관	관계행정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5조 긴급대응	●	●	●	
	제16조 생산·판매등의 금지			●	
	제17조 검사명령			●	
	제18조 추적조사 등		●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 위해성평가		●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		
	제22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23조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 등			●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등	제24조 정보공개 등	●	●	●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		
	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	
제6장 소비자의 참여	제28조 소비자의 참여			●	
	제30조 포상금 지급			●	

자료: 황윤재·한재환(2009)

이 밖에도 위험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8조는 소비자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소비자가 요건을 갖추어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요청에 의한 시험·분석·채취에 대한 시한(120일 이내)과 소비자에 대한 통보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개정 등의 과정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

고(제25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 등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7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안전기본법」상 정책수립과 규제기준 정립은 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의 집행 기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배분되고 있다. 위험분석의 측면에서는 위험평가는 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위험관리는 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위험정보교환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분담되고 있다. 주요 기능 중 정책수립, 규제기준 정립, 위해평가 등이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의 경우 중요성, 전문성, 객관성 등을 고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는 있으나, 지역행정의 중심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령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 식품안전관련 개별법령에서의 권한 분배구조 분석

4.1. 농산물품질관리법¹⁷⁾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몇차례 개정되었다.¹⁸⁾ 개정법령은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식품안전에 기여하고

¹⁷⁾ 부표 1 참조

¹⁸⁾ 이 연구에서는 2009년 6월 9일 개정 법률 이전의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09년 6월 9일 개정되었으며, 2010년 1월 18일과 2월 4일 다시 개정되었다. 개정 법령은 이전과 비교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목적의 하나로 명시되고, 그 수단의 하나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제외되었다.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0년 8월 5

자 하던 이전 법령과 비교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의 하나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이 법이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안전법령체계의 일부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배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정책적 또는 규제적 측면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대체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권한을 갖고, 광역지자체장이 일부 정책 및 규제 집행 권한을 가진다.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은 매우 적다. 예컨대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 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등 전통적인 상품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역할이 다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제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장관의 단독 권한이다. 이는 이러한 제도의 정립 및 집행 등에서 객관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중 지자체의 권한을 규정한 경우는 원산지표시의무의 집행이 있다. 원산지표시대상 농식품의 수거·조사,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위반 농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시에 가진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권한의 분담은 조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실질적인 집행의 필요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중복 집행에 따른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사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표시의무 집행 권한은 농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갖는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의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동시에 조사 권한을 갖는다.¹⁹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안전성조사계획도 두 기관이 매년 독자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장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될 안전성검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일 시행)로 일원화되었다.

¹⁹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자재 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관한 규정으로, 이와 관련된 권한은 농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보유한다. 즉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동시에 갖는 반면 검사기관 지정과 지정취소권한은 농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갖는다. 이에 비해 농산물 ‘검사’제도(제19조)와 ‘검정’제도(제28조)는 농식품부장관의 단독 권한이다.²⁰ 농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제19조), 생산자·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28조).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 또는 규제적 권한은 위험관리 기능에 속한다. 위험관리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비교적 크지만 지방행정기관과 일부 권한이 중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험평가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이 크다.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은 식품안전관련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4조의 6). 장관은 이러한 위험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 사실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평가뿐만 아니라 위험정보교환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다. 위험정보교환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만 명시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 중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8조의 2). 동조 제3항에서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농산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공개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개청구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제공됨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공개법과는 별도의 새로운 정보공표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위험정보교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효과적인 위험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위험정보교환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명시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배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책수립, 기준설정, 위험평가 등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식품부장관이 거의 단

²⁰ 검사와 검정제도는 식품의 유통질서 측면이 강조되는 제도이다. ‘검정’ 및 ‘검사’ 제도는 검사 대상을 농식품의 ‘안전성’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성 조사’와 차이가 있다.

독으로 권한을 가지며,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그 집행에 관한 권한이다. 집행 권한 중에서 조사 등의 권한은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가 동시에 가진다. 지자체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조사·검사와 관련조치, 과태료에 관한 권한은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위임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가 유일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인·허가, 신고 등의 진입규제제도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더욱 적은 것으로 보인다.

4.2. 축산물가공처리법²¹

「축산물가공처리법」은 2010년 5월 25일 개정을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배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이전의 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정책수립에 관한 법률이기 보다는 규제기준정립과 집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배의 중요한 특징은 규제기준의 정립과 집행권한의 배분에서 나타난다. 농식품부장관은 규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권한을 단독으로 가진다. 이러한 권한에는 축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가축 도살·처리 및 집유 기준, 축산물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 위생등급 기준, 업소 위생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기준정립, 적용업소 지정, 지정취소, 시정명령,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위해성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위해평가 및 위해평가 완료전 축산물의 판매, 처리 등의 일시적 금지권한 등의 규제집행 권한 등이 있다.

진입규제권한의 경우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은 광역지자체장,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은 기초지자체장이 갖는다. 그러나 진입규제기준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진입규제 중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의 취소권한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은 허가권한은 없지만, 법 제27조에서 지자체장과 함께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권한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과징금 부과 권한은 부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 축산물수입판매업의

²¹ 부표 2 참조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도 농식품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는 법령만으로는 명확치 않다.

동법 제3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만이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농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는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에 관한 규정으로,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营业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에서는 회수계획제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회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령은 각각 진입규제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감독권한으로서 시설개수명령, 법령에 위반한 축산물 압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축산물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배합비율 변경명령, 공표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은 농식품부장관과 광역·기초지자체장이 동시에 권한을 갖는다. 법 제44조는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1개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4.3. 식품위생법²²

「식품위생법」은 전통적인 식품안전행정의 중심을 이루어온 법률로 이를 집행하는

²² 부표 3 참조

주된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다.²³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은 정책수립에 관한 법률이기보다는 규제집행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로 규제 기준 정립과 집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규제적 관점에서 식약청장은 다양한 규제기준의 정립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이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 규격, 그리고 이들에 대한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등이 있다. 규제기준 정립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단독으로 부여되는 이유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도 영업허가를 위한 시설기준 등 일부 규제기준 정립기능을 담당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경우 규제기준 정립뿐만 아니라 집행 모두 식약청장의 단독권한이다. 식약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며, 적용업소 지정, 기술적·경제적 지원, 준수여부 조사·평가 및 지정 취소나 시정명령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오히려 지자체장의 규제집행권한이 제한된다. 즉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3년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시킨다. 식약청장의 권한 독점과 지자체의 권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역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식약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준수 기준을 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표시제도, 자금지원, 기준 불준수시 등록 취소나 시정명령 등의 권한도 단독으로 부여받고 있다. 개정법에서 신설된 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의 경우, 식약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평가의 집행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와 유사하게 위생수준안전평가를 받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청장, 광역·기초지자체장은 그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출입·검사·수거를 면제할 수 있다. 즉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해서는 식약청장만이 권한을 가지는데, 그 결과 지자체장이 가지는 집행권한이 면제된다. 위험평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위험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²³ 「식품위생법」은 2009년 5월 21일 일부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되었으나 개정 사항은 제한적이다. 또한 2009년 2월 4일 개정(2010년 8월 5일 시행)으로 원산지 관련 규정이 제외되었다. 이 연구는 개정 법률 이전의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²⁴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해 위생관리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 지자체장의 권한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제도는 위생등급제도이다. 식약청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우수업소는 식약청장과 기초지자체장, 모범업소는 기초지자체장이 한다(시행규칙 제43조). 그리고 식약청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된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 권한이 어느 행정기관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출입·검사·수거 등(제17조) 가장 기본적인 규제집행권한의 경우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에게 동시에 부여된다. 따라서 법률규정만으로는 어떤 영업자에 대해 어떤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기준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관련기관들 간에 권한 중첩으로 인한 중복과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권한배분의 실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다<표 2>.

표 2. 식품안전관리지침 권한배분 기준

구분	내용
식품의약품 안전청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단속활동 · 위해요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 기획·계통조사를 통한 정책감시 · 식품범죄에 대한 수사활동 · 각종 감시단속,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개발 ·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지방자치 단체	· 지역 내 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 감시 단속 활동 · 시설, 개인위생 등 기초위생관리 · 현장 중심 지도·계몽 활동 · 일상적 감시단속활동 · 각종 감시단속지침의 현장 적용 및 가이드라인 보급 · 지역 내 발생하는 정보수집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09)

한편 개정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제17조). 이에 따르면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청장은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약청장은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식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 긴급대응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장은 협력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러

한 긴급대응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할 일을 명시해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 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17조에서는 이러한 식품의 잠정적 제조·판매 금지를 식약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역시 ‘식약청장’이 유일한 해당기관이다. 결국 「식품안전기본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는 둘 다 식약청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다음으로 위해식품회수제도에 대해 보면, 식품영업자는 당해 식품이 판매 금지 또는 기준·규격 위반 식품임을 알게 된 때에는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1조의2).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식약청장,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영업정지와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들 권한은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도 어떤 경우에 어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권한을 행사하는지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 진입규제권한과 행위규제권한으로 구분할 경우, 진입규제권한은 영업종류별·영업소별로 식약청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나누어 가진다(22조).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영업의 종류를 8가지 대분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이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다.²⁵ 그 밖의 업종은 영업신고만을 요한다. 행위규제집행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조사권한과 제재처분권한은 식약청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가진다(제17조).²⁶ 법령상으로는 이러한 권한은 관련기관 간 권한분담에 대한

²⁵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영업허가’ 대상 업종은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며, 그 밖의 업종은 영업신고만을 요한다. 허가과 신고권한의 행정기관별 배분을 보면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식품조사처리업의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의 경우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에만 식약청장에게 신고하고, 대부분의 경우(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²⁶ 제재처분에는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명령, 영업허가취소, 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폐쇄명령, 품목제조정지명령, 영업소폐쇄조치,

기준없이 순수하게 중첩되는 권한으로 보인다.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 및 검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 위해식품 공표 등 식약청장의 일부 규제집행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일단 지방식약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면 식약청장은 원칙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의 규제집행수준을 보완하고 지역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식약청의 권한이 지자체와 중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식품위생법」의 중심을 이루는 규제집행기능은 위험관리행정에 해당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사안별로 위험관리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위험평가의 경우 대부분 식약청장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규제기준의 정립·집행의 전제로서 과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식품 등의 유해성 내지 위험 여부를 평가해 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식약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식약청장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위해 여부를 신속히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제13조), 위해여부의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시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생산유통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상 생산·판매금지조치제도와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로서, 「식품위생법」이 식품위생분야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정보교환의 경우에도 식약청장의 권한이 크다. 개정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식약청장의 위탁을 받아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사고 발생시 정보제공, 식품위해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업무로 한다. 식약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다만 보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게 지역내에서의 정보교환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는 있다.

종합하면 규제기준정립, 위험평가, 위험정보교환 기능은 식약청장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출입·검사·수거 등 기본적인 규제집행권한은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에게 동시에 부여되어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도 거의 변화가 없으며, 개정법에서는 오히려 일부 신설된 제도에 대해 식약청장에게 단독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지자체의 역할은 일부 규제 집행, 위험관리에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위반사실공표명령, 과태료부과 등이 포함된다.

국한되며, 대부분의 역할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동시에 귀속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 시민식품감시인 위촉, 영업제한 등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으며, 위생 등급에 의한 우수·모범업소 지정 취소권한, 집단 급식소 신고와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안전관련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련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정책수립과 규제기준정립 권한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과 규제집행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분배된다. 위험평가기능은 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위험관리는 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위험정보교환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분담된다.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역할이 배분된 규정은 많지 않다. 주로 ‘관계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것이 지자체를 의미하는 지는 기본법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권한분배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수립기능은 중앙행정기관, 정책집행은 대체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규제기준정립과 집행도 이와 유사하게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매우 단순한 규제집행 업무만을 수행하며, 이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대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진입규제권한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중앙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행위규제권한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개별법에서는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위험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위험관리는 중앙 및 지자체가 권한을 분담하고 있다. 위험정보교환의 경우 지자체의 권한 또는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정책 수립, 제도 및 기준 정립, 위험평가 등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

부에 대한 권한 집중은 식품안전행정의 신속성, 지역실정 반영, 지자체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전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절한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배분이 무조건적인 권한 확대보다는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식품안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의 주요 목적과 대상 등 성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식품 안전관리가 직접적인 법의 목적인 경우와 사료, 농약 등의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 권한 분배가 동일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규제집행에 있어서 단순행정만 수행할 경우 지자체의 지역식품행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련행정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복되고 있는 규제권한의 경우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집행될 경우 집행과다,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면서 지자체와 상호보완적으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이 분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위험관리의 경우 하위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집행단계에까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식품안전관리행정의 완결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즉 식품안전관리행정은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식품위험관리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이는 중앙정부에 과중한 행정 부담을 유발시키며, 식품위험관리에 있어서 관제탑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성, 공정성 등에서 높은 수준의 행정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불충분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적 우선순위와 관심을 저하시키며 지역단위에서의 식품안전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개별법률은 정보공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한 또는 역할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자체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가 지역에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수단을 마련하고 이러한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험평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주도적인 권한행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의

견 반영의 창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을 고려할 경우 권한 확대 등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자체는 식품안전관련 전담조직 또는 인력, 예산 등 인적·물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며, 심도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서만 지자체의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거나,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없다. 지자체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수립권한을 갖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지자체의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에서와 같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계획을 형식적으로 상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조율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식품안전관련 권한 분배구조를 식품안전관련법령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권한 분배구조를 법령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권한 분배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컨대 식품안전관련법령에서 지자체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안전성 확보의 중요성, 통합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역으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의 확대를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법령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전반적인 권한분배구조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상위법과 하위법 등을 포괄한 개별법령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나 규정상의 개선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분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 행정, 제도적인 측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령적, 제도적, 행정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경선 외. 2008.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서울대학교.
- 김은진. 2008. “식량권과 식품안전-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 권배근. 2007.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1집. pp. 201-219.
- 남진식 외. 2006. 선진적 식품안전관리 정책 개발 연구. 수원여자대학.
- 류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방민원. 2001.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연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유영철. 2004. “식품행정에 있어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한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4호. pp. 73-98.
- 이계임 외. 2008.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C2008-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외. 2009. “한국의 식품관련 법령체계 분석.” 「농촌경제」 제32권 제3호. pp. 1-21.
- 이원우 외. 2008. 식품안전법연구 Ⅰ-현행 식품안전법에의 쟁점과 개선과제. CeLPU(Center for Law & Public Utilities,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6. 경인문화사.
- 최지현 외.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R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윤재, 한재환. 200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R5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고 접수일: 2010년 3월 9일
원고 심사일: 2010년 3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0년 7월 3일

부 록

부표 1.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권한분배

법조항		역할 범위		
		중앙 정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 인증 등	제4조 표준규격화	●		
	제5조 품질인증	●		
	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실시	●	●	
	제13조 시료수거 등	●	●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제15조 원산지 표시	●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8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실시	●	●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	●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	제19조 농산물의 검사	●		
	제24조 검사판정의 취소	●		
	제25조 보고 및 점검 등	●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	●	

부표 2.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권한분배

법조항			역할 범위		
			중앙 정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신고			●	
	제9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1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		
		3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	●		
		5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 증명서 발급	●		
		7항 필요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실시	●	●	●
		8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지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		
		10항 출입·검사 면제, 용자사업 우선 지원	●	●	●
		11항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		
제4장 검사	제11조 가축의 검사 2항 착유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명령			●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4항 검사 위탁		●	
		5항 식용란 검사 명령	●	●	
	제12조의 2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	●

	제12조의 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1항 검사결과 통보	●	●	
		2항 이의신청 접수	●	●	
		3항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	●	
		4항 재검사 실시 결과 통보	●	●	
	제13조	검사관과 자체검사원 임명·위촉	●	●	
	제14조	검사보조원	●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2항 통관절차 완료전의 축산물 검사	●		
	제19조	출입·검사·수거	●	●	●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	●	●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2조	영업의 허가 및 관련사항 변경		●	●
	제24조	영업의 신고			●
	제25조	품목제조보고		●	
	제26조	영업의 승계	●	●	●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	●	●
	제28조	과징금처분	●	●	●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	●	●
	제33조의2	위해평가	●		
제6장 감독	제2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	●	●
	제35조	시설개수	●	●	●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	●	●
	제37조	공표	●	●	●
	제38조	폐쇄조치	●	●	●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		
	제40조	보조금	●	●	●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		
	제43조	청문	●	●	●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제8장 벌칙	제47조	과태료	●	●	●

부표 3. 식품위생법상의 권한분배

법조항		역할 범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4장 표시	제10조 표시기준	●		
	제11조 식품의 영양표시 등	●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	●		
제6장 검사 등	제15조	위해평가	●	
	제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	
	제17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18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 등	●	
	제21조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
	제23조	식품 등의 재검사	●	●
	제2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	
	제2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무	2항 자가품질위탁검사	●	●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	●	●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	●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3항 우수 등급 영업소의 검사 면제	●	●	●
제7장 영업	제37조 영업허가 등		●	●	●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3조 영업 제한			●	
	제47조 위생등급		●	●	●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7항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위반 시 등록을 취소	●		
	제50조 위생수준 안전평가	1항 식품 등의 위생관리, 안정성 평가	●		
		2항 안전평가기준의 고시	●		
		4항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		
		8항 안전평가 영업소의 검사 면제	●	●	●
		9항 안전평가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67조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		
	제70조 지도·감독 등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 시정명령		●	●	●
	제72조 폐기처분 등		●	●	●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	●	●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	●	●
	제75조 허가취소 등		●	●	●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	●	●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79조 폐쇄조치 등		●		
	제80조 면허취소 등		●	●	●
	제81조 청문		●	●	●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	●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	●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	●	●
제12장 보칙	제85조 국고 보조		●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3항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원인 시설 등에 대한 검사	●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9조 식품진흥기금				●
	제90조 포상금 지급		●	●	●
	제91조 권한의 위임		●	●	